

KAU 소통위원회 운영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KAU 소통위원회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대학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KAU 소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논의한다.

1.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성원 간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
2. 공식적인 조직이나 채널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학내 현안 사항
3. 각 구성원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항
4.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 정수는 16인으로 한다.

②당연직 위원은 학생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.

③임명직 위원의 정원 1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 위원 : 4명
2. 직원 위원 : 4명
3. 학생 위원 : 4명

제4조(임명직 위원 위촉)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추천된 자 중 총장이 위촉한다.

1. 교원 위원은 교무팀에서 추천한다.
2. 직원 위원은 총무팀에서 추천한다.
3. 학생 위원은 학생지원팀에서 추천한다.

제5조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논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되,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